

동양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제정	1998.03.01.
제 1 차	개정	2003.01.04.
제 2 차	개정	2004.06.05.
제 3 차	개정	2007.03.21.
제 4 차	개정	2012.02.17.
제 5 차	개정	2013.02.18.
제 6 차	전면개정	2020.04.08.
제 7 차	개정	2021.03.01.
제 8 차	개정	2022.09.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동양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동양초등학교라 칭한다.(이하 본교 또는 우리 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9에 소재한다.

제4조(근거)

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학기제의 조정이 필요한 때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1학기과 2학기의 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3. 개교기념일 : 11월 20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6. 학년말 방학
 7. 토요일휴업일
 8. 기타 연간 수업일수가 확보된 학교교육과정 상 명시된 휴업일
- ② 제6조 ①항 제4호, 5호, 제6호의 휴업 기간은 제11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6조 ①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학교장은 별도의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이수 범위 및 교육목적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교육감이 통보하는 당해 연도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9조(학생정원)

- ① 학생정원은 교육감(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체험학습·평가·졸업

제10조(교육과정)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시수 인정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2.)
- ②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학교 간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외체험학습(연30일(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4주), 단체 교환학습(2주 이내)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단, 국외 여행 시 보호자와 함께 한 증빙서류(항공권, 출입국증명서 등)를 학교에 제출한다.(개정 2021. 2.)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⑤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시행에 있어 학교규칙에서 적용 범위가 어려운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에 준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1. 2.)
- ⑦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예외인정 가능) (신설 2021. 2.)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에 관계된 평가는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제14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부의 기입요령과 통계처리는 NEIS 출석부 처리 운영방침에 따른다.

1.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3)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결석한 자’의 학적은 정원 외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4)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은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가정방문, 안전확인, 내교 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대신한다.

다. 기타 결석: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출석 사항 평가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6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단, 지각(조퇴, 결과) 2회는 결석 1회와 같이 평가한다.

1.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제12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간주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예규 제44호를 근거로 함]
 - 가. 결혼: 형제, 자매(1일)
 - 나. 입양: 본인(20일)
 - 다.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외)조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7.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월1일에 한함)
- ③ 위와 같은 사유의 결석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관리는 그 학생의 직전 평가 성적을 참조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 5 장 입학·전학·휴학·취학 유예와 면제

제16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 ③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본 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여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자

제17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기입학을 신청하여 1년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여 학교장이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②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한다.
- ③ 입학기일 이후 3일~입학기일 이후 9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에는 교직원,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

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한다.

3.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4.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5.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한다.

제20조(전·입학)

-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2조(취학·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면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학교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① 역할
 -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면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 ③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⑤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6 장 특수교육

제24조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 (통합교육)

- ①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경우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한다.

제26조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둔다.

제27조 (차별의 금지)

-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 ②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3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
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
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
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
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
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
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
로 정한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
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

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㉓, ㉔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㉓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8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생의 포상·훈육 및 징계

제36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37조 (시상 및 장학금 지급)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기능이 뛰어난 아동에게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8조 (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활동
- ② 특별 교육 이수
 1. 징계처분을 할 때에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9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4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43조(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 활동은 당해 연도 동양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6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제48조(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0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3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분쟁조정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분쟁조정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권보호 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8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60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학칙제정】 이 학교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3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4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5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6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7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8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